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년 1분기

농식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

Ⅰ.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24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Ⅱ. 국가별 리콜사례

1. ’24년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농림축산식품부

Ⅰ. 국가별 통관거부사례

1. '24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동향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국가별 현황 : ('23년 1분기) 총 99건 → ('24년 1분기) 총 63건

중국 ▼

한국산 17건
'24년1분기누계 17건
'23년1분기누계 20건/연누계 123건

라벨링/포장	4
성분 부적합	10
위생	1
서류미비	1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

대만 ▼

한국산 21건
'24년1분기누계 21건
'23년1분기누계 5건/연누계 16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3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18
기타	0

미국 ▼

한국산 17건
'24년1분기누계 17건
'23년1분기누계 63건/연누계 140건

라벨링/포장	7
성분 부적합	2
위생	3
서류미비	4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

EU ▼

한국산 2건
'24년1분기누계 2건
'23년1분기누계 1건/연누계 6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1
기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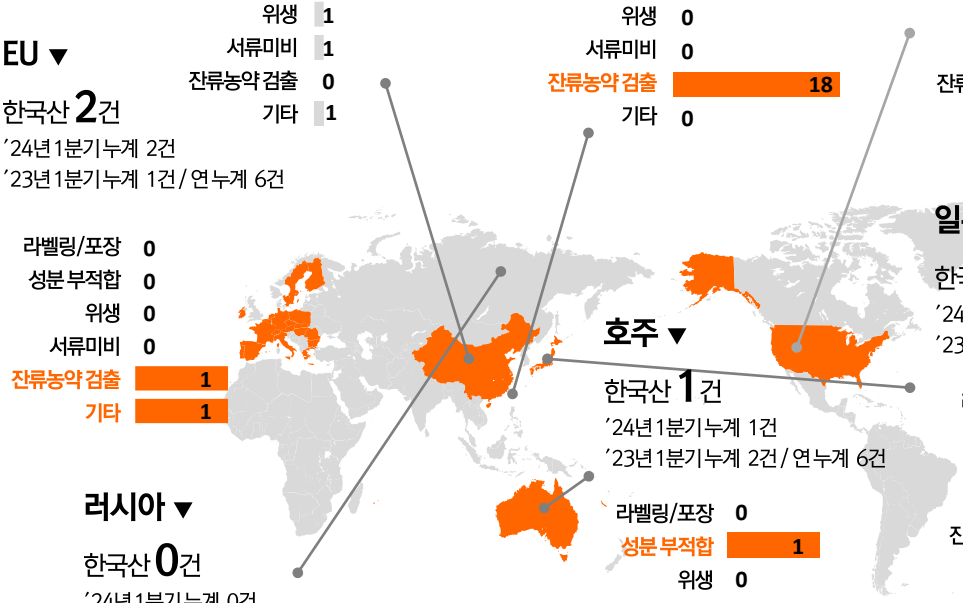

일본 ▼

한국산 5건
'24년1분기누계 5건
'23년1분기누계 8건/연누계 30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5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호주 ▼

한국산 1건
'24년1분기누계 1건
'23년1분기누계 2건/연누계 6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1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러시아 ▼

한국산 0건
'24년1분기누계 0건
'23년1분기누계 0건/연누계 0건

한국산 수입 통관거부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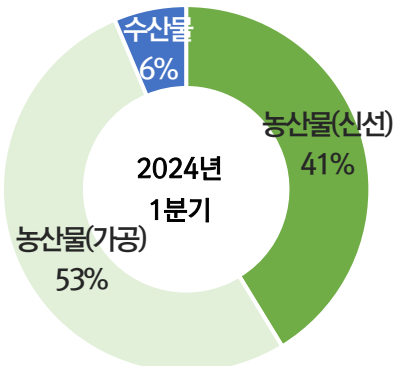

과실류/총 20건
대만 17건, 중국 2건
호주 1건

면류/총 13건
중국 11건, 미국 2건

기타조제 농산품/총 12건
미국 9건, 일본 2건
EU 1건

소스류/총 3건
대만 3건

채소류/총 3건
미국 2건, 대만 1건

버섯류(농산물)/총 2건
미국 2건

※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 2024년 5월 기준, 중국의 2024년 3월 문제사례는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임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미국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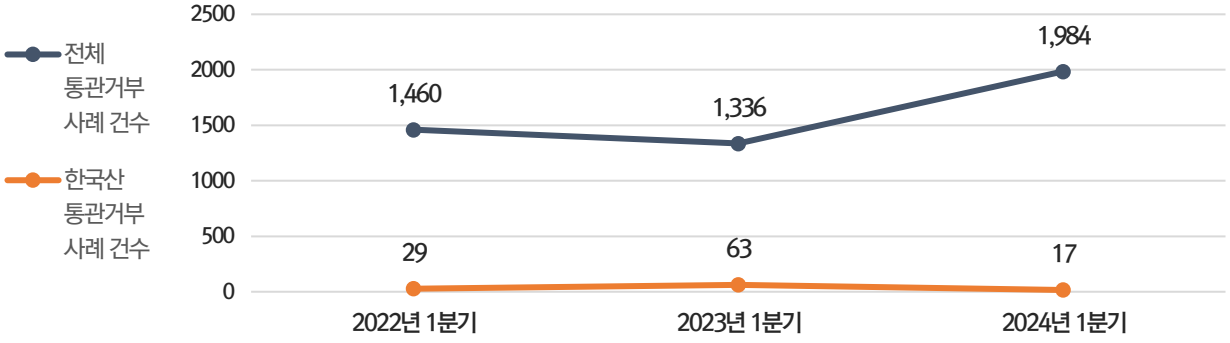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5	0	5	12	41	53	6	0	6	-6	-41	-47	-89%
2월	10	0	10	2	0	2	6	1	7	4	1	5	250%
3월	14	0	14	4	4	8	3	1	4	-1	-3	-4	-50%
합계	29	0	29	18	45	63	15	2	17	-3	-43	-46	-73%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으로, 밀크 씨슬 제품 5건에서 모두 라벨링 조건을 미준수하여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면류, 버섯류(농산물), 어류, 채소류가 각 2건으로 확인됨. 이들의 문제사유는 서류 미비,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검출, 비위생적 제조 등 다양하게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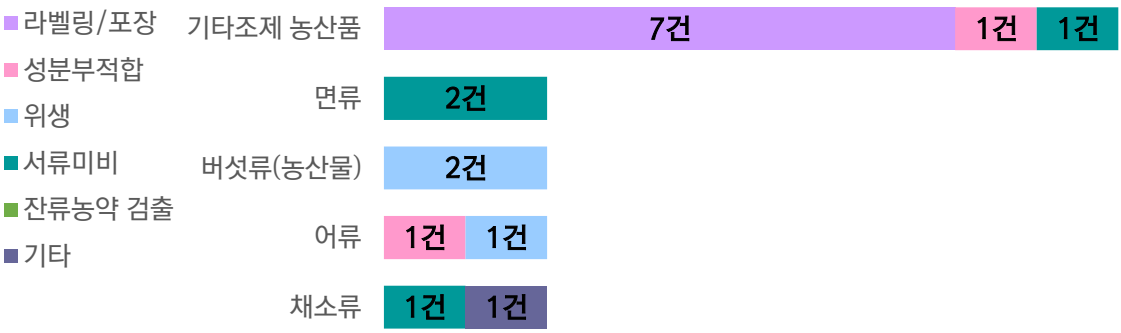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미국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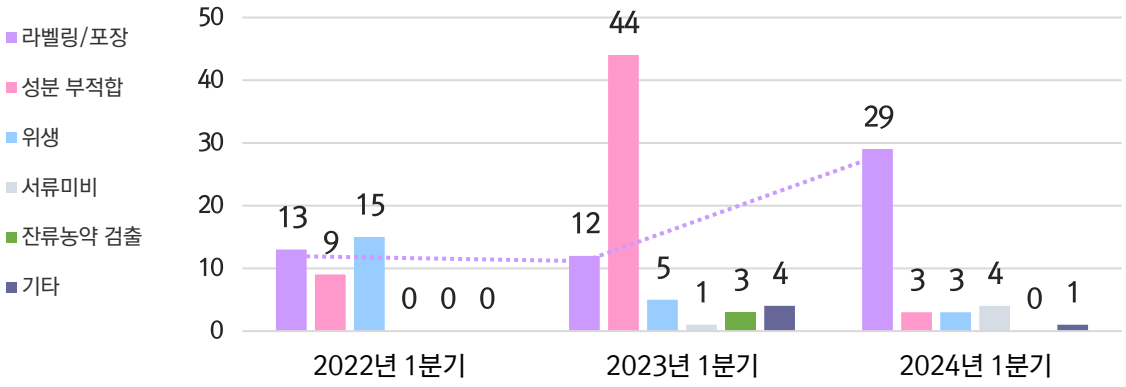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13	0	13	11	1	12	29	0	29	18	-1	17	142%
성분 부적합	9	0	9	4	40	44	2	1	3	-2	-39	-41	-93%
위생	15	0	15	2	3	5	2	1	3	0	-2	-2	-40%
서류미비	0	0	0	0	1	1	4	0	4	4	-1	3	300%
잔류농약 검출	0	0	0	3	0	3	0	0	0	-3	0	-3	-300%
기타	0	0	0	3	1	4	1	0	1	-2	-1	-3	-75%
합계	37	0	37	23	46	69	38	2	40	15	-44	-29	-42%

출처 : 미국 FDA

- 2024년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40건으로 농산물 38건, 수산물 2건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건이 감소하였으며, 수산물 관련 문제사례가 2건으로 전년 대비(46건) 크게 감소함.** 3개년 평균 3%의 증가율로 한국산 문제사례 발생 건수가 증가함
- (라벨링/포장) **2024년 1분기 기준, 라벨링/포장문제(총 29건)가 통관거부 문제사유로 나타났으며,** 2023년 1분기에는 성분 부적합, 2022년 1분기에는 위생 문제가 주로 발생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4년 1분기 라벨링 문제는 주로 제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유통업자의 정보를 미표기하여 통관거부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외에도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포함,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불명확한 라벨링 정보 제공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식품 라벨링 관련 세부 규정 내용은 https://www.fda.gov/media/81606/download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중국

※중국은 2024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4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과 2월 수치만 반영됨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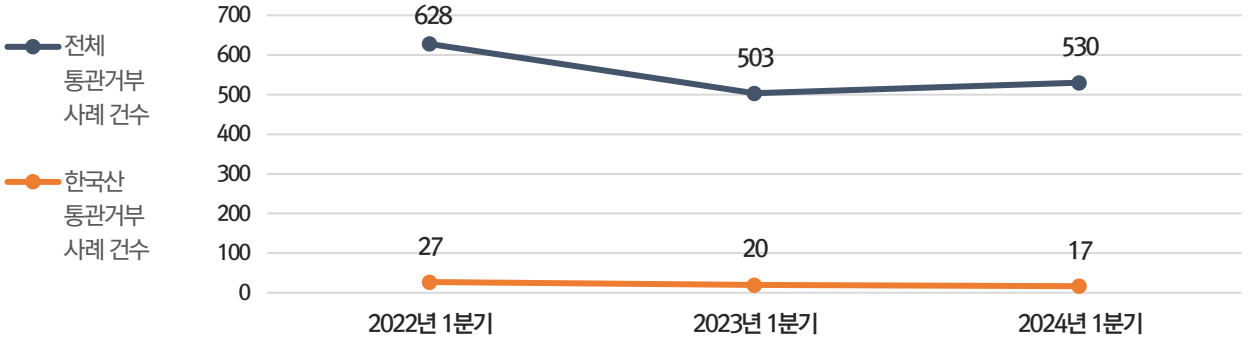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6	3	9	1	2	3	16	1	17	15	-1	14	467%
2월	4	7	11	16	0	16	0	0	0	-16	0	-16	-100%
3월	6	1	7	1	0	1	0	0	0	-1	0	-1	-100%
합계	16	11	27	18	2	20	16	1	17	-2	-1	-3	-15%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대(對)중국 한국산 식품 중 가장 많은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면류로, 라면 제품 11건 중 10건이 미검역 소고기 성분을 함유해 성분 문제로 통관거부 됨
-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과실류가 2건 확인되었으며, 두류, 인삼류, 커피류, 해조류가 각 1건씩 발생하였음. 이들은 주로 라벨이 중국 식품 라벨링 기준에 부적절하여 통관거부 조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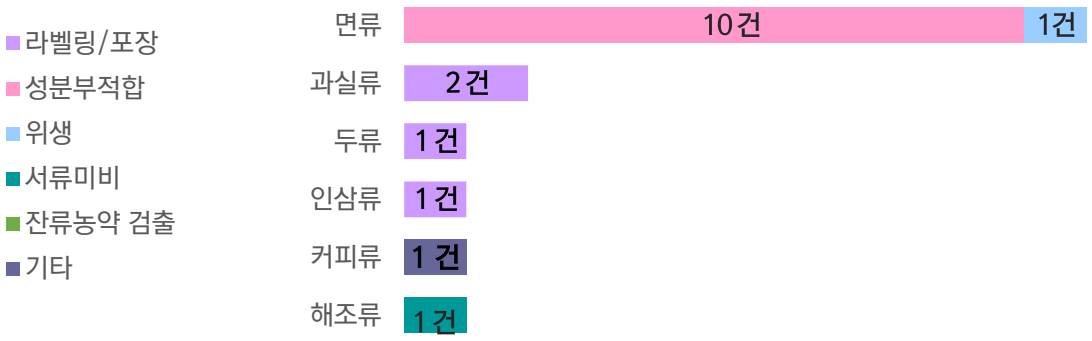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중국

※중국은 2024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4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월과 2월 수치만 반영됨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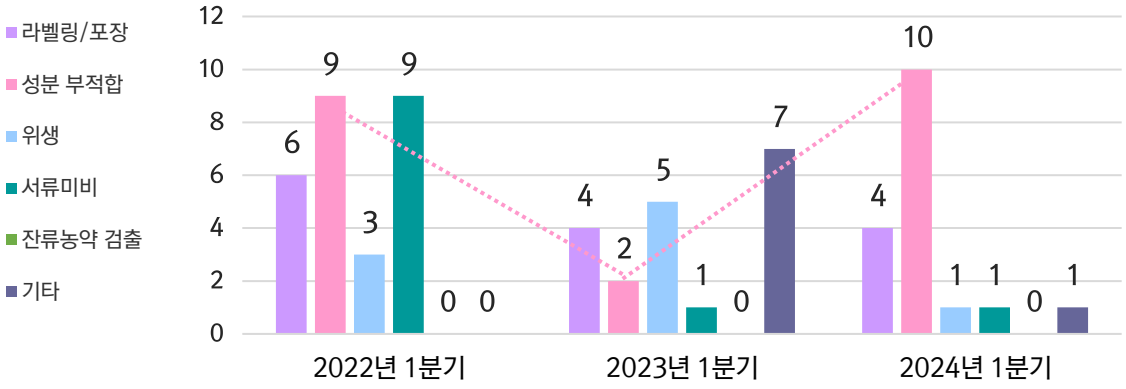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6	0	6	4	0	4	4	0	4	0	0	0	0%
성분 부적합	8	1	9	2	0	2	10	0	10	8	0	8	400%
위생	1	2	3	3	2	5	1	0	1	-2	-2	-4	-80%
서류미비	1	8	9	1	0	1	0	1	1	-1	1	0	0%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7	0	7	1	0	1	-6	0	-6	-86%
합계	16	11	27	17	2	19	16	1	17	-1	-1	-2	-11%

출처 : 중국 해관총서

- 2024년 1분기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17건으로, 농산물 16건, 수산물 1건 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건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농산물 관련 사례가 수산물 대비 높게 발생함**
- 2024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 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 문제이며, 2023년 1분기에는 기타 문제(검역 검증을 받지 않음), 2022년 1분기에는 성분 부적합 및 서류미비 문제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성분 부적합) 2024년 1분기 성분 부적합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10건으로 모두 농산물 품목의 문제사례였으며, 2022년 및 2023년 1분기의 한국산 문제사례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에서 성분 부적합 문제사유가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중국으로 소고기와 같은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 수출 시에는 검역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성분이 신식품 원료일 경우 '신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중국의《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제9조에 의거한 것으로, 세부 지침 규정은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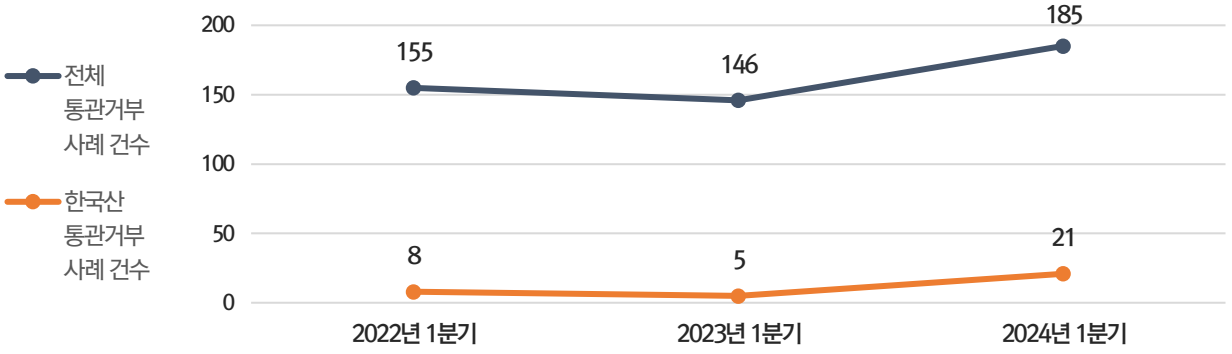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5	0	5	2	0	2	9	0	9	7	0	7	350%
2월	2	0	2	1	0	1	9	0	9	8	0	8	800%
3월	1	0	1	2	0	2	3	0	3	1	0	1	50%
합계	8	0	8	5	0	5	21	0	21	16	0	16	320%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과실류 17건, 소스류 3건, 채소류 1건으로 확인됨
- 한국산 통관거부 품목 중 과실류와 채소류는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통관거부 되었으며, 소스류는 소브산 등의 식품 첨가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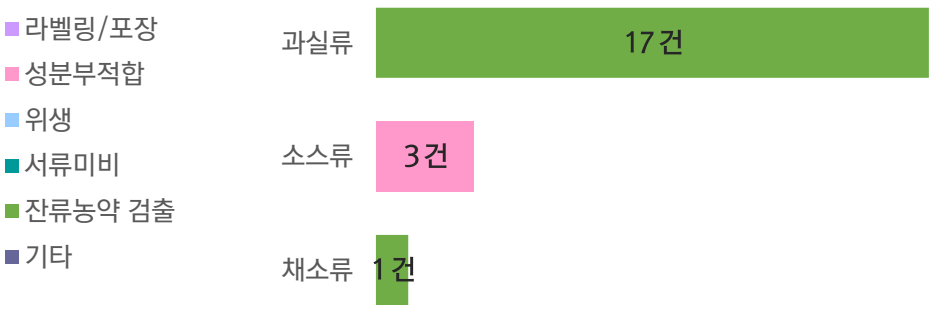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대만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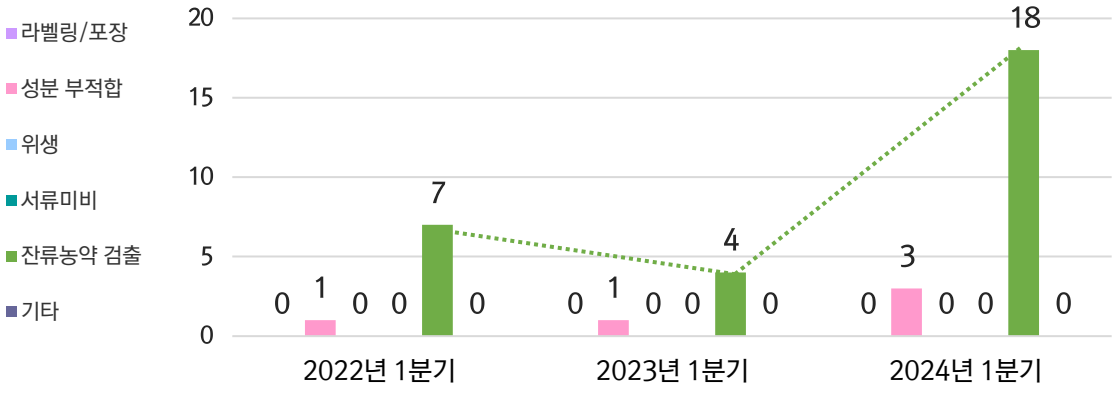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1	0	1	1	0	1	3	0	3	2	0	2	20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7	0	7	4	0	4	18	0	18	14	0	14	35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
합계	8	0	8	5	0	5	21	0	21	16	0	16	320%

출처 : 대만 FDA

- 2024년 1분기 대만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21건으로,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관련 문제사례의 발생 건수가 증가함**
- 2024년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문제 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도 잔류농약 검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잔류농약 검출) 2024년 1분기 잔류농약 검출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18건으로 모두 농산물 품목의 문제 사례였으며, 2022년 및 2023년 1분기에도 한국산 농산물 품목에서 잔류농약 검출 문제가 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4년 1분기 한국산 식품의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모두 신선 식품인 과실류와 채소류에서 확인됨
- **대만 FDA는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을 통해 농약별 잔류 허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일본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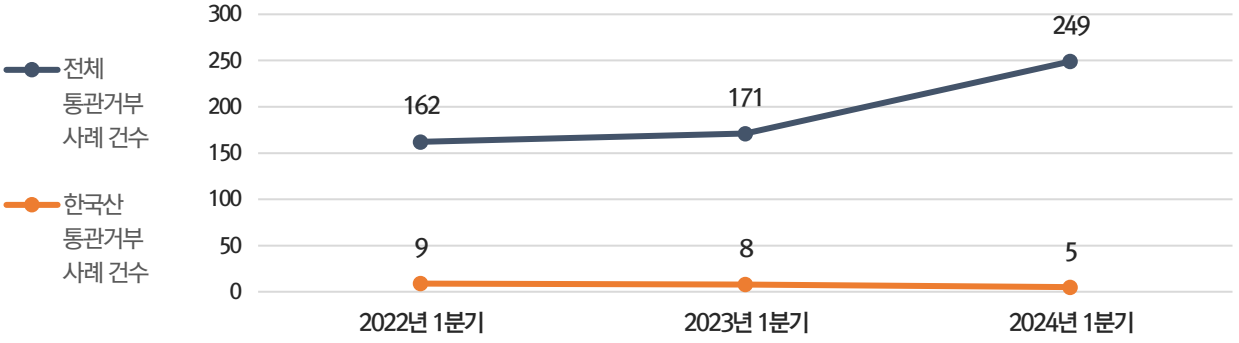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2	3	5	2	1	3	2	1	3	0	0	0	-
2월	4	0	4	1	0	1	2	0	2	1	0	1	100%
3월	0	0	0	0	4	4	0	0	0	0	-4	-4	-100%
합계	6	3	9	3	5	8	4	1	5	1	-4	-3	-38%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 문제사유가 발생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 2건, 음료 2건, 갑각류 1건으로 확인됨
- 통관거부된 품목의 문제사유는 모두 위생(미생물) 문제로, 세균 검출, 대장균 양성으로 확인되어 통관거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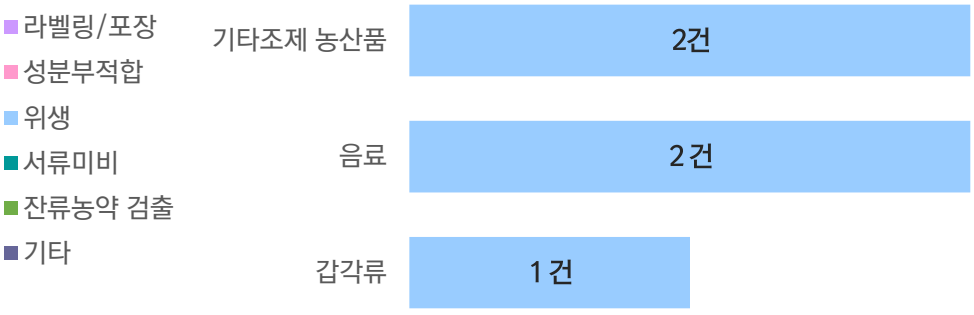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일본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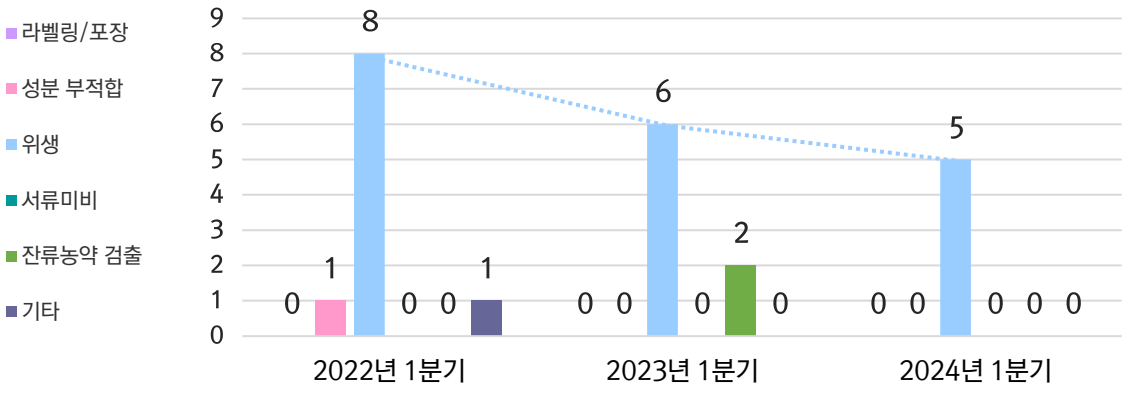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1	0	1	0	0	0	0	0	0	0	0	0	-
위생	5	3	8	1	5	6	4	1	5	3	-4	-1	-17%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0	2	0	2	0	0	0	-2	0	-2	-100%
기타	1	0	1	0	0	0	0	0	0	0	0	0	-
합계	7	3	10	3	5	8	4	1	5	1	-4	-3	-38%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 2024년 1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총 5건으로 농산물 4건, 수산물 1건 임.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수산물 관련 문제사례가 감소함
- 2024년 1분기 가장 많은 문제사례가 확인된 문제사유는 위생 문제로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에도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위생) 2024년 1분기 위생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5건으로 전년과 다르게 주로 농산물 품목의 문제사례로 확인되며, 2023년 1분기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에서도 위생 문제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4년 1분기 일본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의 위생 문제는 분말음료류와 냉동 식품에서 발생함
- 일본은 《식품별 규격기준》을 통해 분말 음료와 냉동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지침 내용은 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EU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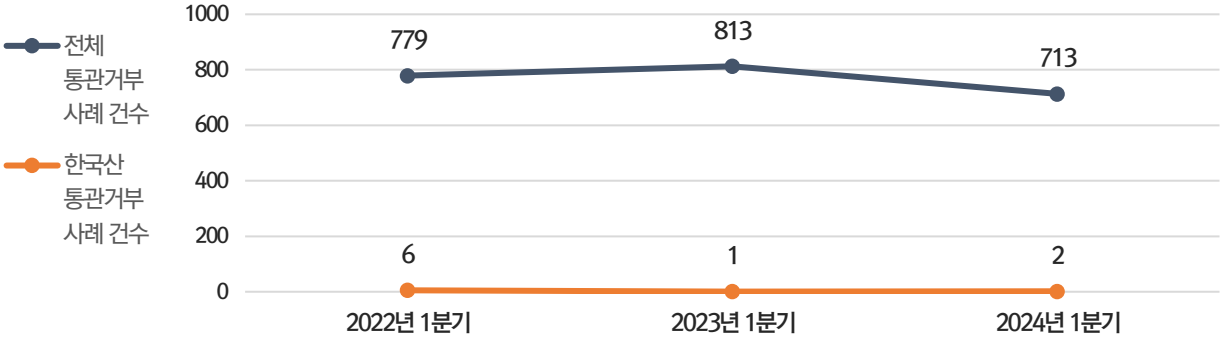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0	0	0	0	0	0	1	0	1	1	0	1	100%
2월	2	1	3	1	0	1	1	0	1	0	0	0	-
3월	3	0	3	0	0	0	0	0	0	0	0	0	-
합계	5	1	6	1	0	1	2	0	2	1	0	1	100%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EU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된 제품은 기타조제 농산품, 차류 각 1건으로, 기타조제 농산품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가 검출되었으며, 차류는 홍차 제품에서 무허가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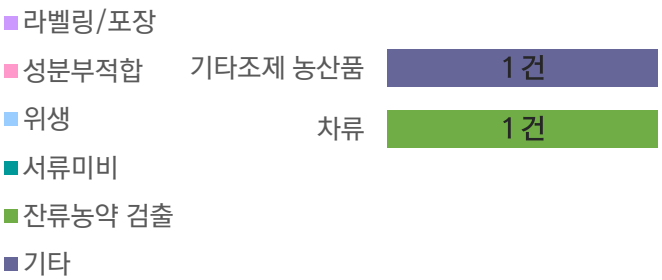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EU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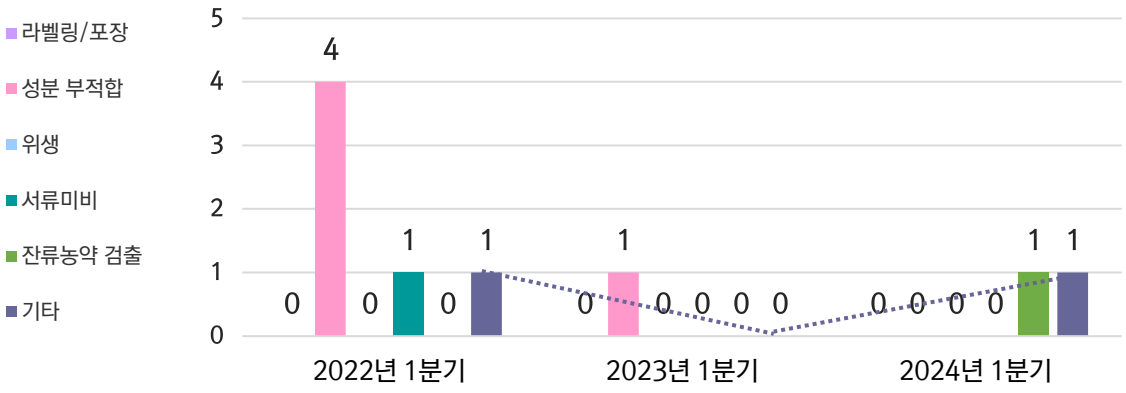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4	0	4	1	0	1	0	0	0	-1	0	-1	-100%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1	0	1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1	0	1	1	0	1	100%
기타	0	1	1	0	0	0	1	0	1	1	0	1	-
합계	5	1	6	1	0	1	2	0	2	1	0	1	100%

출처 : RASFF(유럽연합 식품안전정책 포탈)

- **2024년 1분기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품목은 농산물 총 2건이며, 총 문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건 증가함**
-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에는 성분 부적합 문제가 주로 발생했던 것과는 달리 2024년 1분기에는 잔류농약 문제와 기타 문제가 각각 발생함
- **(잔류농약, 기타) 2024년 1분기 잔류농약 및 기타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2건이며, 잔류농약 검출 문제는 지난 3개년 기준 처음 발생했으며, 기타 문제는 2022년 1분기에 1건 발생한 바 있음**
- (수출 시 유의사항) 2024년 1분기 EU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식품의 문제는 홍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고, 복합조제품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가 검출됨
- 잔류농약 관련 규정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R0060#ntr2-L_2016014EN.01000301-E0002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전자 변형 유기체 관련 규정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3R1946&qid=1715071243689 에서 확인 가능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호주는 2024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4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2월 수치만 반영됨

호주

◦ 전체 및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및 글로벌 통관거부 사례 3개년 추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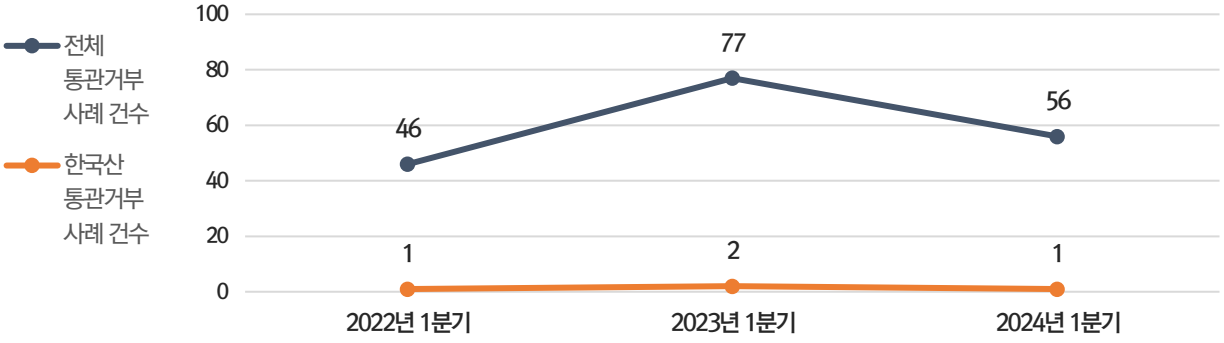

구분	한국산 불합격 건수												
	2022년(A)			2023년(B)			2024년(C)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1월	1	0	1	0	1	1	0	0	0	0	-1	-1	-100%
2월	0	0	0	0	1	1	1	0	1	1	-1	0	-
3월	0	0	0	0	0	0	0	0	0	0	0	0	-
합계	1	0	1	0	2	2	1	0	1	1	-2	-1	-100%

◦ 한국산 통관거부 최다 발생 품목 및 문제사유 분석

- (주요 품목) 2024년 1분기 호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통관거부된 제품은 과실류 1건으로, 한국에서 수입된 과일주스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 징크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통관거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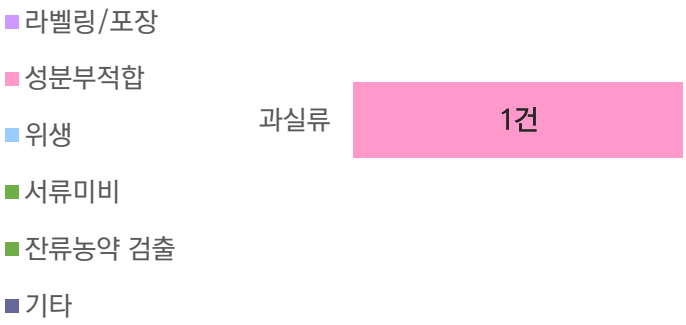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2.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분석 정보

※호주는 2024년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고시되어 2024년 1분기 통계 수치는 1-2월 수치만 반영됨

호주

◦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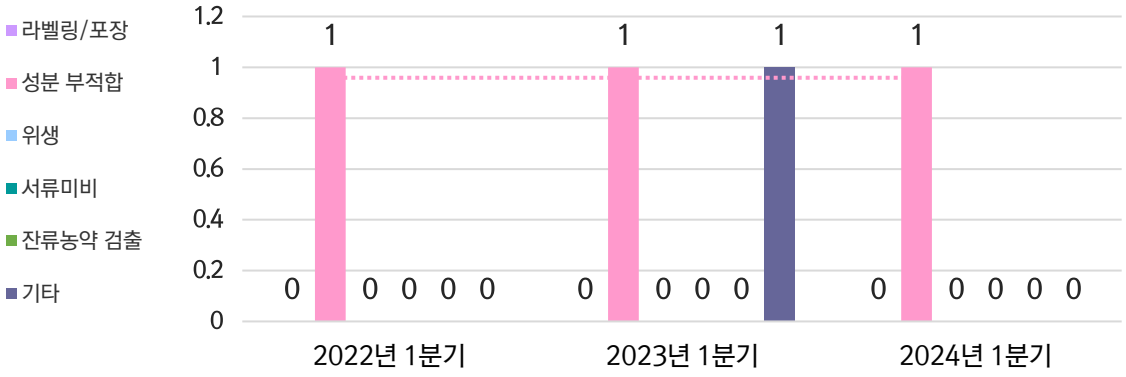

거부 사유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C/B)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농산물	수산물	전체	
라벨링/포장	0	0	0	0	0	0	0	0	0	0	0	0	-
성분 부적합	1	0	1	0	1	1	1	0	1	1	-1	0	-
위생	0	0	0	0	0	0	0	0	0	0	0	0	-
서류미비	0	0	0	0	0	0	0	0	0	0	0	0	-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
기타	0	0	0	0	1	1	0	0	0	0	-1	-1	-100%
합계	1	0	1	0	2	2	1	0	1	1	-2	-1	-100%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청

- 2024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유는 농산물 총 1건이며, 2023년 1분기 발생 건수 대비 1건 감소함.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모두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주요 문제사유는 성분 부적합으로 확인됨
- (성분 부적합) 2024년 1분기 성분 부적합 문제의 발생 건수는 총 1건이며,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징크옥사이드가 검출되어 문제가 됨
- (수출 시 유의사항) 2024년 1분기 호주에서 통관거부 문제가 발생한 한국산 식품은 과일 주스 제품임
- 호주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식품첨가물과 관련된 규정은 https://www.legislation.gov.au/F2015L00439/latest/text 에서 확인할 수 있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해당 수입국은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 발생

①[라벨링/포장]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	U.S.C §343(f)(1)(B)	5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U.S.C §343(a)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다. 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U.S.C §343(e)	5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라.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음	U.S.C §343(s) U.S.C §343(q)(f)	3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마.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U.S.C §352(f)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바.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 미표기	U.S.C §343(e)	3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사.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U.S.C §343(q)	4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아.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U.S.C §343(w)	5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자.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21 CFR 101.15(c)	2건

②[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어류	가.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 발견	U.S.C §342(a)(1), (2)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승인 받지 못한 신약 포함	U.S.C §381(a)(3)	2건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③ [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검출	U.S.C §342(a)(1), (2)	2건
농산물	버섯류(농산물)	나.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U.S.C §342(a)(4)	1건

④ [서류]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U.S.C §381(q)(1), (2)	1건
농산물	면류			2건
농산물	채소류			1건

⑤ [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채소류	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U.S.C §342(a)(3),(4)	1건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가.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음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f)(1)(B)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 라벨 정보의 명확성 – 당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라벨에 표시해야하는 모든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가 다른 단어, 문장,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 그리고 해당 용어가 일반적인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구매 및 사용의 일반 조건 하에서)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1) 라벨에 표시되는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2)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관련 조항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나.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a)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a) 허위 또는 오기 라벨 (1) 해당 라벨이 특정 상황에서 허위이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2) 비타민 또는 미네랄 식품(해당 법령의 제 350조 기준)의 경우, 광고가 내용적 측면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법령 제 350조 (b)(2)항을 위반한 라벨일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또는 식품 종류 – 순중량 – 영양성분표 – 성분 및 알레르겐 표시 문구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제품명 – 식품유형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영양성분 – 용기 · 포장 재질 –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 주의사항 –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 조사처리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 기타표시사항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다. 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e)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e) 패키지 양식 (1)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장, (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 포장은 별도 예외 규정 준수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을 표기 - 제조업체의 이름 혹은 주소가 없을 경우 제품과 관련된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표기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도로 이름 및 번호, 도시, 집(Zip) 코드, 주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업소명과 소재지 정보 - 라벨 상에 기재된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명 기재 - 식품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기재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라.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 확인 불가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s), U.S.C §343(q)(f)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s) 식이보조제 (2)(B) 식이 보충제의 라벨 또는 라벨 표시가 해당 성분의 이름으로 수정될 수 있는 '영양 보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q)(f) 식이보조제 제품은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함 (i) 영양정보는 제품에 상당한 양으로 존재하고 일일 섭취 권장량이 설정된 식이 성분을 나열해야 하지만, 식이 성분이 상당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나열할 필요 없으며, 다른 식이 성분을 나열해야 함 (ii) 식이 성분 목록에는 1 회 제공량 당 해당 성분의 양이 포함되어야 함 (iii) 식이 성분 목록에는 식이 성분의 출처가 포함될 수 있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의 일반명 또는 통상명이 있어야 함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조된 경우 각 재료의 일반명 및 통상명이 정보 표시면에 적절히 눈에 잘 띄는 문구로 표시해야 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이보조제 표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된 내용 없음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마. 사용법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52(f)
내용	U.S.C §352 허위표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Misbranded drugs and devices)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f) 사용법(복용법) 및 경고표시 (1) 적절한 사용 지침(사용법)이 없는 경우 (2) 병리학적 상태나 어린이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한 적절한 경고 또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하지 않은 용량이나 투여 방법 또는 적용 기간에 대한 적절한 경고가 없는 경우 단, 모든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적용되는 이 단락 (1)항의 요구 사항이 공중 보건 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해당 의약품 또는 장치를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함 (진단용 의료 기기와 관련된 규정 내용 생략) ※ 해당 사례는 건조 인삼 관련 제품 사례로,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으로 수출된 제품에 적용된 규정으로 파악됨.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를 하나라도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URL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V-partA-sec352.ht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분류
건강보조식품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제품명(건강보조식품명) - 내용량(건강보조식품의 양) - 영양성분표 - 성분표 -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분류
건강보조식품
관련 조항(필수 표기 항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 제품명 - 업소명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내용량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원료명 및 함량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바.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주소지 및 이름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e)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e) 패키지 양식 (1)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업장, (2) 중량, 계량 또는 개수 측면에서 내용물의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포장 형태인 경우, 합리적인 변형이 허용되며 소형 포장에 대한 예외는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제조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정보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을 표기 - 제조업체의 이름 혹은 주소가 없을 경우 제품과 관련된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표기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도로 이름 및 번호, 도시, 집(Zip) 코드, 주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업소명과 소재지 정보 - 라벨 상에 기재된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명 기재 - 식품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기재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사.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 미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q)
내용	U.S.C §343 허위표시 식품(Misbrand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q) 식품영양정보 (1) 라벨 혹은 라벨링에 하기의 영양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A) (i) 통상소비량(serving size) 및 해당 식품에 적합한 가정 기준 표시 제공량, 혹은 (ii) 식품 사용 일 회 제공량이 통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일반 가정 식품 제공량 표시 측정 단위 (B) 용기 당 분량 수 혹은 다른 측정 단위 (C) 총 열량 (i) 모든 열량원 유래 (ii) 총 지방 유래 식품의 각 일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 내에서 (D) 하기의 영양소 함량 : 각 일 회 제공량 혹은 다른 측정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총단백질 (E) 건강식단규범(Healthy Dietary Practices)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장관(Secretary)의 판단이 있을 경우, 라벨 혹은 라벨링에 표시하도록 요구되는 비타민, 미네랄 혹은 다른 영양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3&num=0&edition=preli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미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회 권장섭취량, 총분량(~회분), 총 열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DV%), 첨가당, 비타민, 미네랄, 기타 성분 등을 포함해야 함

Nutrition Facts

8 servings per container

Serving size **2/3 cup (55g)**

Amount per serving

Calories **230**

	% Daily Value*
Total Fat 8g	**10%**
Saturated Fat 1g	**5%**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0%**
Sodium 160mg	**7%**
Total Carbohydrate 37g	**13%**
Dietary Fiber 4g	**14%**
Total Sugars 12g	
Includes 10g Added Sugars	**20%**
Protein 3g	
Vitamin D 2mcg	10%
Calcium 260mg	20%
Iron 8mg	45%
Potassium 240mg	6%

* The % Daily Value (DV) tells you how much a nutrient in a serving of food contributes to a daily diet. 2,000 calories a day is used for general nutrition advice.

한국 라벨링 규정

관련 조항

영양성분표에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 총열량,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등을 포함해야 함

영양정보 총 내용량 00g 000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00mg	00%
탄수화물 00g	00%
당류 00g	00%
지방 00g	00%
트랜스지방 00g	
포화지방 00g	00%
콜레스테롤 00mg	00%
단백질 00g	00%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아.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3(w)
내용	– 알레르겐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 ※ 미국, 2023년 1월부터 참깨 알레르기 성분 표시 필수 – 식품 라벨에는 사용된 모든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을 표시해야 함 – 생선과 갑각류의 경우 그 종류(예. 넙치, 대구, 게, 새우 등)를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항원의 공급원 정보는 제품 라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함유(Contain)' 문구와 함께 성분목록 바로 뒤 또는 옆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 라벨에 필수 알레르겐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차 접촉으로 인해 우연히 식품 알레르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알레르기 성분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되어 회수, 수입거부, 압류 등에 처할 수 있음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21-chapter9-subchapter4&saved=%7CZ3JhbnVsZWlkOlVTQy1wcmVsaW0tdGl0bGUyMS1zZWN0aW9uMzQy%7C%7C%7C0%7Cfalse%7Cprelim&edition=prelim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우유, 계란, 어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2023년 1월 1일부로 추가)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관련 조항
※ 식품 알레르기 필수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항 10mg/kg 이상 함유)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_자. 필수 라벨 정보 영어 미표기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21 CFR 101.15(c)
내용	21 CFR 101.15 식품; 필수 정보의 명명 (Food; prominence of required statements) (c) (1) 라벨 또는 라벨 표시 행위는 당국 지침에 따라 모든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가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단, 푸에르토리코 공화국의 영토 또는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영토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그 지역의 주언어가 영어를 대체할 수 있음) (2) 라벨에 영문명으로 대표할 수 없는 외국어가 사용될 경우, 관련 단어, 문장 및 기타 정보는 외국어로 표시함
URL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01.15

미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관련 조항
(1) 라벨에 표시되는 단어, 서술 및 기타 정보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함 (2)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음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수입 식품 등
관련 조항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여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가. 독성물질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 물질 또는 첨가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 ※ FDA의 「Food Chemical Safety」에 따르면, FDA는 식품 포장, 보관 또는 기타 취급을 통해 식품 성분 및 식품 접촉 물질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품 공급망 단계의 화학 오염 물질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조치를 취함. 이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화학 오염 물질로는 환경 오염 물질(중금속 오염물질, 공정 오염 물질)과 농약 성분 등이 포함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성분부적합] _나. 승인받지 못한 신약 포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a)(3)
내용	U.S.C §381수입 수출(Imports and exports) (a) 수입품; 등록된 외국 시설 리스트; 등록되지 않은 외국 시설의 샘플; 시험 및 심사 거부 (3) 그러한 물품이 불량하거나, 라벨에 오기가 있거나 'U.S.C §355 신약(New drugs)' 규정을 위반한 경우, §384(a)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가 §384(a)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1(II) 규정에 따라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된 경우, §360(bbb-8d)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 성분인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가.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1), (2)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 해당 법령에 의거, 식중독 및 음식 관련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가진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로 분류됨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한국 미생물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미국 유통 식품	식품 일반(살균제품/분말제품 제외)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리스테리아균 검출 조항
양성반응 시 부정·불량식품으로 규정	n(검사 시료수)=5, c(최대 허용 시료수)=0, m(미생물 최소 허용 기준)=0, M(미생물 최대 허용 기준) = 10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4)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2&num=0&edition=prelim

미국 비위생적 제조 관련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 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비위생적 제조 관련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④ [서류] _가.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81(q)(1), (2)
내용	U.S.C §381 수입과 수출(Imports and Exports) (q) 수입식품 관련 증명서 (1) 일반 보건부 장관은 미국으로의 식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3)에 기술된 법인은 해당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혹은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증명서 혹은 다른 보증서는 수송 관련 인증서, 해당 식품 제조, 처리, 포장 및 보관하는 인증 시설 목록 형식 혹은 보건부 장관이 명시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함 (2) 인증서 요청 고려 요소 보건부 장관은 (1)에 기술된 증명서 요구 식품 결정은 하기를 포함한 식품 위험에 근거함 (A) 해당 음식과 관련하여 알려진 안전 위험 (B) 해당 음식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알려진 식품 안전 위험 (C) 보건부 장관의 과학적, 위험 기반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된 결론 (i) 해당 식품의 국가, 지역 혹은 원산지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표준은 요건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 처리, 포장, 보관된 유사 식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불충분함 (ii) 증명서는 보건부 장관의 식품 수입 거절 혹은 승인 결정을 보조함 (D) (7)에 확립된 처리방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된 정보
URL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81&num=0&edition=prelim

미국 서류 규정 조항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1) 식품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2) 보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른 보증서

한국 서류 규정 조항

추가 인증서 요청에 대한 조항
(1)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2) 생산국 정부 증명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 원료 사용을 입증) (3)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기타] _ 가. 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U.S.C §342(a)(3),(4)
내용	U.S.C §342 부정·불량식품(Adulterated Food)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URL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fr=1.500

미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a) 유독한, 비위생적 성분

(1)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경우
(2) 해당 법령의 346조 의미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첨가 독성물질 또는 첨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3) 불결 또는 부패, 분해된 물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함유하거나 식품에 부적합한 경우
(4) 오염되거나 건강에 유해한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 포장 혹은 보관된 경우
(5) 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도살 외의 방식으로 사망한 동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6) 용기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주는 유독한 혹은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7) 의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해당 법령의 348조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또는 면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 유해식품 규정 조항

관련 조항

[식품위생법 제2장] 제 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또는 소분한 것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중국

①[라벨링/포장]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라벨 불합격	GB 7718-2011	2건
	두류			1건
	인삼류			1건

②[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면류	가. 미검역 소고기 성분 함유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10건

③[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면류	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GB 17400-2015	1건

④[서류]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수산물	해조류	가. 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1건

⑤[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커피류	가. 중국 등록번호 미획득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라벨링/포장] 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11)
내용	3. 기본 요구사항 3.7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됨(스티커라벨 사용 불가) 3.8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해야 함(상표 제외). 꾸미는 역할을 하는 각종 예술적인 글씨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3.8.1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가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어서는 안 됨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함. 모든 외국어 표기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상표 제외) 3.9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35cm2 이상이면 강제 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 다양한 품종, 개별 포장으로 단독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식품마다 따로 식품표시를 해야 함 3.11 외부 포장이 쉽게 식별할 수 있거나 외포장재를 통해 내부 포장재(용기)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강제 표시 내용 또는 일부 강제 표시 내용은 외포장재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강제 표시 내용을 표시해야 함
URL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222.html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라벨링/포장]_가. 라벨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중국 라벨링 규정 조항	한국 라벨링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선포장 식품	수입식품 등
라벨 표기 방식	라벨 표기 방식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된 형태로 부착하면 안 됨(스티커라벨 하용 불가)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적 〉 35㎠인 경우 라벨 내용은 1.8㎜보다 커야 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 일자, 유통기한만 표기 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1.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사용 가능 (단,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하며, 원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 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면 안 됨) 2. 한글로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여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함 3.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 표시 스티커에서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 가능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성분부적합]_가. 미검역 소고기 성분 함유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海关总署第249号令)
내용	제 6장 식품의 수출입 제 92조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함 수입한 식품·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식품 수입이 가능함
UR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91/index.html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③ [위생] _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 인스턴트 라면(GB 17400-2015)
내용	– 분류 : 인스턴트 라면 – 미생물 제한량 ① 균락총수/(CFU/g) : n=5, c=2, m=10^4, M=100^5 ② 대장균군/(CFU/g) : n=5, c=0, m=10, M=10^2 (*) 면과 스프 검사에만 적용됨 (※ n :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540AA19F-0F1A-4A8A-B7F0-27B5177F5EE8

중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면류
균락총수 검출 기준
① 균락총수/(CFU/g) : n=5, c=2, m=104, M=1005 ② 대장균군/(CFU/g) : n=5, c=0, m=10, M=102

한국 균락총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면류
균락총수 검출 기준
대장균 : n=5, c=1, m=0, M=10 (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④[서류]_가. 상품증서 불합격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내용	제 8조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은 등록 추천 기업을 심사하고 검사하여 등록 요건에 충족함을 확인한 후에 해관총서에 등록 추천하며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함 (1)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의 추천서 (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3)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영업등록증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 (identity) 증명 문서 (4)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성명서 (5)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심사 및 검사 보고서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기업의 공장, 작업장, 냉동 창고의 평면도 및 공정 흐름도와 같은 기업의 식품안전위생 및 방어시스템 관련 문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제 7조 소재국 주무관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는 품목 :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casing),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관련 제품, 꿀벌 제품, 알류 및 관련 제품, 식용 유지 및 그 원료, 소를 넣은 밀가루 음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 야채와 말린 콩,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말린 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카카오 열매, 특수용도식품, 건강식품 ※ 그 외 품목은 직접 등록을 시행하며, 등록 시 하기 서류가 필요함 (1) 기업 등록 신청서 (2)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 발급한 영업등록증 등과 같은 기업 아이덴티티(identity) 증명 문서 (3)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 충족을 약속하는 성명서
URL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16161.htm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⑤ [기타] _가. 중국 등록번호 미획득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내용	제 1장 총칙 제2조. 본 규정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의 생산/가공/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으로 통칭함)의 등록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14조. 해관총서는 심사 및 평가 상황을 근거로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을 등록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등록되지 않으며, 소재국(지역) 주무관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URL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21/content_5616161.htm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대만

①[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소스류	가. 소브산 1.1g/kg, 1.2g/kg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2건
		나. 라우릴설페이트 0.03 g/kg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1건

②[잔류농약 검출]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비페나제이트 0.01/0.14 ppm, 에토펜프록스 0.02/0.1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2건
		나. 사이에노피라펜 0.01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다. 테트라닐리프롤 0.01~0.1 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2건
		라. 프로파자이트 0.06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2건
농산물	채소류	마. 플로니카미드 0.02ppm 검출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1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_가. 소브산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 분류 : 보존료 - 소브산 검출 기준 : 1.0g/kg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소스류
소브산 검출 기준
1.0g/kg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당류가공품, 마요네즈, 잼류
소브산 검출 기준
1.0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① [성분부적합] _나. 라우릴설페이트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
내용	- 분류 : 보존료 (해당 성분은 간장의 보존료로만 사용 가능) - 대상 품목 : 간장 -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검출 기준 : 0.01g/kg ※ 통관거부 고시 원문 " 식품첨가물 사용방법 및 제한량, 규격표준 " 에 의거, 간장(醬油)의 보존료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사용량은 Laurylsulfate로 계산하여 0.01 g/kg이하임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Content.aspx?pcode=L0040084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라우릴설페이트 검출 기준
간장	0.01g/kg

한국 식품첨가물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라우릴설페이트 검출 기준
간장	0.01g/kg (PLS 기준)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가. 잔류농약 비페나제이트 및 에토펜프록스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살충제 – 대상 품목 : 유자 – 비페나제이트 검출 기준 : 불검출 – 에토펜프록스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유자 내 비페나제이트 및 에토펜프록스 허용 기준은 표 1,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유자
비페나제이트 및 에토펜프록스 검출 기준
– 비페나제이트 검출 기준 : 불검출 – 에토펜프록스 검출 기준 :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유자
비페나제이트 및 에토펜프록스 검출 기준
– 비페나제이트 검출 기준 : 0.7mg/kg – 에토펜프록스 검출 기준 : 2.0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나. 잔류농약 사이에노피라펜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살충제 - 대상 품목 : 포도 -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포도 내 사이에노피라펜 허용 기준은 표 1,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포도	포도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 불검출	- 사이에노피라펜 검출 기준 : 3.0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다. 잔류농약 테트라닐리프롤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살충제 – 대상 품목 : 포도 –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포도 내 테트라닐리프롤 허용 기준은 표 1,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1.5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라. 잔류농약 프로파자이트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살충제 – 대상 품목 : 포도 – 테트라닐리프롤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포도 내 테트라닐리프롤 허용 기준은 표 1,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프로파자이트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포도
프로파자이트 검출 기준
10.0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 ② [잔류농약 검출] _마. 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
내용	– 분류 : 살충제 – 대상 품목 : 딸기 – 플로니카미드 검출 기준 : 불검출 ※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 제 15조 –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제3조 동물성 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농약 잔류물은, 부록 표 1, 2에 제시된 식품 내 농약 잔류물 한계 기준과 외부 잔류물 한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해당 표에 제시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함 해당 법령에 의거, 딸기 내 플로니카미드 허용 기준은 표 1, 2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아야 함
URL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40083

대만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딸기
플로니카미드 검출 기준	불검출

한국 잔류농약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딸기
플로니카미드 검출 기준	1.0 mg/kg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일본

① [위생]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세균수 검출 기준 이상 검출	식품별 규격기준	1건
수산물	갑각류			1건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나. 대장균 양성	식품별 규격기준	1건
농산물	음료			2건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가. 세균수 검출 기준 이상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食品別の規格基準)－냉동식품(冷凍食品), 삶은 게(ゆでがに)
내용	1. 분류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냉동 호빵) (*) 냉동식품 중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동결한 것으로서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을 제외한 것을 말함 - (냉동시키기 직전에 가열한 것) 세균수 검출 기준 : 검체 1g당 100,000 이하 - (냉동 직전에 가열한 것 이외의 것) 세균수 검출 기준 : 검체 1g당 3,000,000 이하 2. 분류 : 삶은 게 - 냉동 삶은 게 세균수 검출 기준 : 검체 1g당 100,000 이하 (※ n :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일본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가열 후 섭취, 냉동시키기 직전에 가열한 것)
세균수 검출 기준
1g 당 100,000 이하
적용 대상
냉동 삶은 게
세균수 검출 기준
1g 당 100,000 이하

한국 세균수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세균수 검출 기준
즉석조리식품 : n=5, c=0, m=0 (멸균 제품에 한한다)
적용 대상
기타 수산물가공품
세균수 검출 기준
n=5, c=0, m=0 (멸균 제품에 한한다.)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①[위생]_나. 대장균 양성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식품별 규격기준 (食品別の規格基準) – 냉동식품(冷凍食品), 분말 청량음료()
내용	1. 분류 : 냉동식품(냉동 쌀떡볶이) – 대장균 검출 기준치 : 음성 2. 분류 : 분말 청량음료 – (유산균을 첨가하지 않은 분말 청량음료)대장균 검출 기준치 : 음성 – (유산균을 첨가한 분말 청량음료)대장균 검출 기준치 : 음성 (※ n : 검사시료 수, c : 최대허용시료 수, m : 미생물 최소허용기준, M : 미생물 최대허용기준)
URL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shokuhin_kikaku/index.html

일본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냉동식품(가열 후 섭취, 냉동시키기 직전에 가열한 것)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이어야 함
적용 대상
분말 청량음료
대장균 검출 기준
음성이어야 함

한국 대장균 검출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대장균 검출 기준
즉석조리식품 : n=5, c=1, m=0, M=10 (살균 제품에 한한다)
적용 대상
기타 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
대장균 검출 기준
n=5, c=1, m=0, M=10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EU

①[잔류농약]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차류	가.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 초과	(EU) 2016/60	1건

②[기타]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기타조제 농산품	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 150mg 검출	(EC) No 1946/2003	1건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EU

◦ ① [잔류농약] _가.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 초과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U) 2016/60
내용	- 분류 : 잎과 허브-기타(홍차 잎) - 클로르피리포스 검출 기준 : PLS 기준 0.01ppm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R0060#ntr2-L_2016014EN.01000301-E0002

EU 잔류농약 규정 조항

적용 대상
홍차 잎
클로르피리포스 검출 기준
0.01ppm

한국 잔류농약 규정 조항

적용 대상
차류
클로르피리포스 검출 기준
※한국은 2024.1.1부로 개별농산물에 대한 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을 폐지함 [식품 공전] 7) 농약 잔류허용기준 (1)①㉮ 농산물은 개별 기준과 그룹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②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0.01mg/kg 이하를 적용한다. (PLS 기준 적용)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EU

◦ ① [기타] _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유기체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EC) No 1946/2003 –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하여
내용	제4조. 당사국 및 비당사국에 대한 수입 통지 수출자는 환경으로의 의도적 방출을 목적으로 하고 부속서 I, (i)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경을 넘어 최초로 이동하기 전에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관할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최소한 부속서 I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출자는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2조. 신분증 및 첨부 서류 1. 수출자는 GMO와 함께 첨부하는 문서에 다음 정보를 명시하여 해당 GMO를 수령하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a) GMO를 포함하거나 GMO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b) 해당 GMO에 부여된 고유 식별 코드(해당 코드가 있는 경우) 2.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GMO의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수출자의 신고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합니다: (a) 해당 GMO가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b)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의 세부 정보 제공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3R1946&qid=1715071243689

3.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수입국 규정 정보

호주

①[성분부적합] 1분기 한국산 통관거부 문제사례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유	적용 법령	발생건수
농산물	과실류	가. 허용되지 않은 성분 징크옥사이드 검출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Section 15(1)(a)	1건

◦①[성분부적합]_가. 허용되지 않은 성분 징크옥사이드 검출 관련 세부 규정 정보

관련 규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Section 15(1)(a)
내용	1992년 수입 식품 관리법 Division 1. 식품의 수입 및 이동에 대한 통제 Section15. 특정 식품에 대한 주문 보류 – 검사 또는 검사 및 분석에서 불합격된 식품 (1) 다음과 같은 경우 (a) 특정 종류의 검사 또는 검사 및 분석 결과 해당 식품 또는 식품의 일부가 불합격 식품으로 판명된 경우
URL	https://www.agricul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HO%2019057%20Instrument.pdf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4512/latest/text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미국

전년 대비 49% 증가 ▲

('23) 총 1,336건 (문제사유 2,208건) → ('24) 총 1,984건 (문제사유 3,3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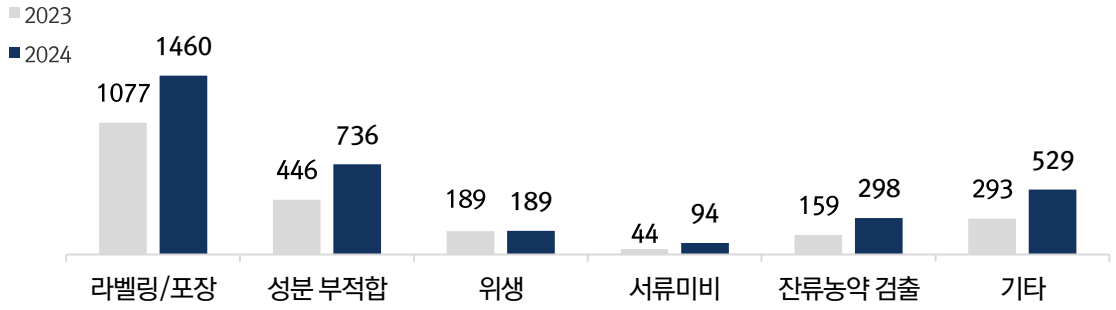

EU

전년 대비 12% 감소 ▼

('23) 총 813건 (문제사유 820건) → ('24) 총 716건 (문제사유 7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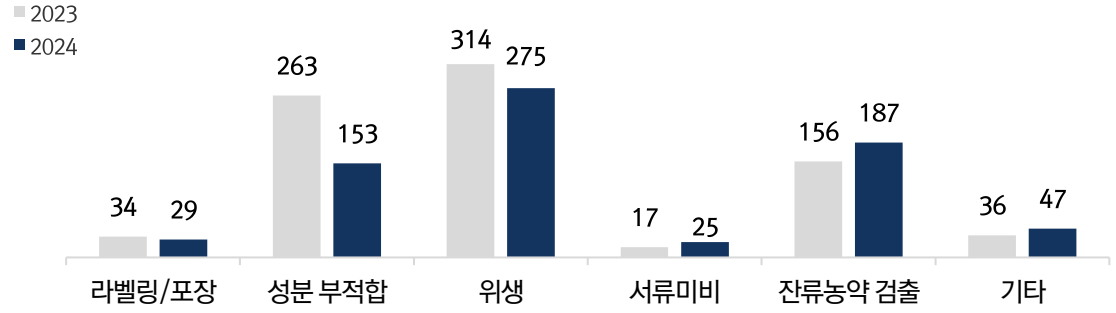

중국

전년 대비 5% 증가 ▲

('23) 총 503건 → ('24) 총 530건

※중국의 경우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공시되어 2024년 1월~2월 문제사례의 합산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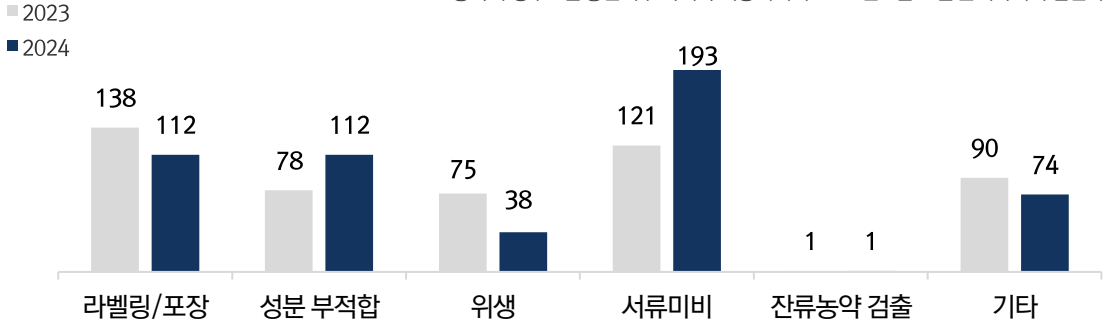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Case Analysis on Food Import Refusal

4. 1분기 글로벌 통관거부사례 동향

글로벌 수입 통관거부 유형별 현황

일본

전년 대비 47% 증가 ▲

('23) 총 169건 (문제사유 171건) → ('24) 총 249건 (문제사유 2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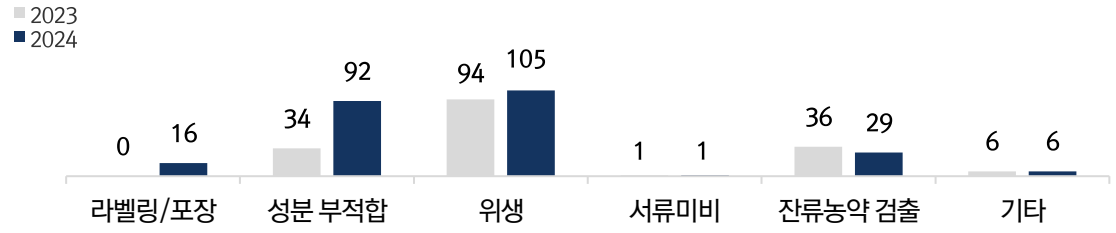

대만

전년 대비 27% 증가 ▲

('23) 총 146건 → ('24) 총 185건

호주

전년 대비 27% 감소 ▼

('23) 총 77건 → ('24) 총 56건

※호주의 경우 3월 통관거부 사례가 미공시되어 2024년 1~2월 문제사례의 합산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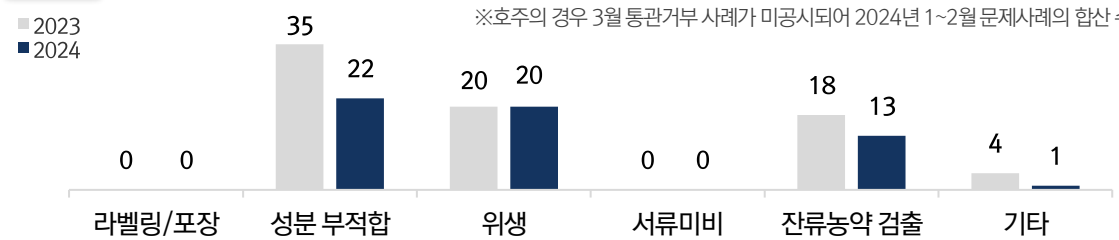

러시아

전년 대비 -100% 감소 ▼

('23) 총 3건 → ('24) 총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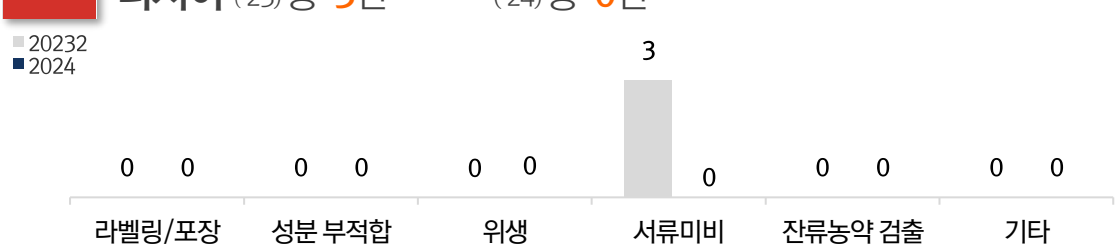

※통관거부사례 공시 9개국 중 인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이후 홈페이지에 고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글로벌 통관거부사례는 한국산 통관거부사례를 포함함

※ 미국, EU, 일본의 경우 1개 통관거부사례당 다수의 문제사유가 발생하여, 문제사유 건수 별도 집계함

Ⅱ. 국가별 리콜사례

1. ’24년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동향

한국산 리콜사례 국가별 현황 : (’23년 1분기) 총 35건 → (’24년 1분기) 총 18건

EU ▼

한국산 1건
’24년 1분기 누계 1건
’23년 1분기 누계 0건 / 연 누계 6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

필리핀 ▼

한국산 12건
’24년 1분기 누계 12건
’23년 1분기 누계 22건 / 연 누계 76건

라벨링/포장	0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12

호주 ▼

한국산 5건
’24년 1분기 누계 5건
’23년 1분기 누계 3건 / 연 누계 19건

라벨링/포장	5
성분 부적합	0
위생	0
서류미비	0
잔류농약 검출	0
기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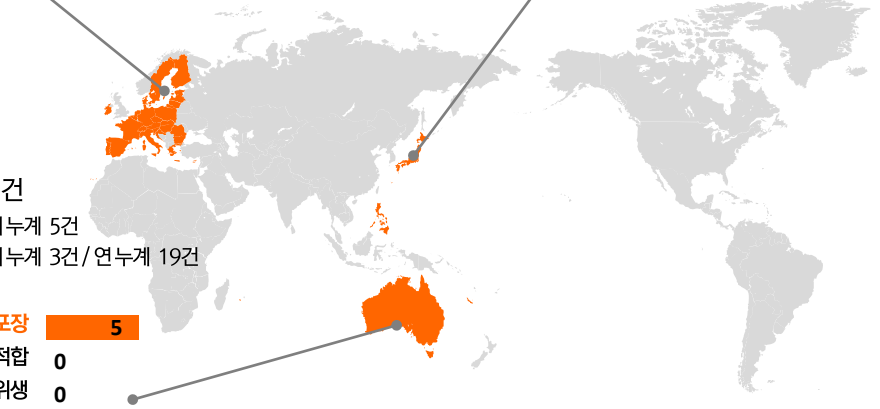

한국산 리콜사례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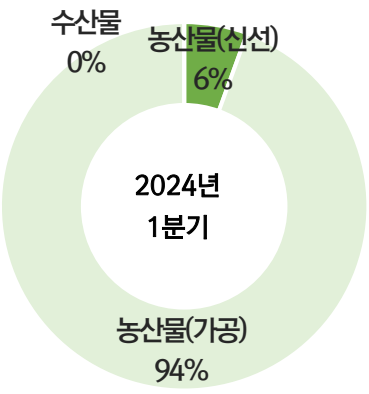

기타조제 농산품 / 총 5건
필리핀 3건, 호주 2건

음료 / 총 5건
필리핀 5건

면류 / 총 4건
호주 3건, EU 1건

과자류 / 총 2건
필리핀 2건

채소류 / 총 1건
필리핀 1건

커피류 / 총 1건
필리핀 1건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당해 연간 한국산 주요 리콜사례의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EU

한국산 1건 (문제사유 1건)

한국산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2	0	1
농산물	2	0	1
수산물	0	0	0

- **'24년 1분기 EU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1] 사례는 총 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한국산 제품은 면류 1건으로, 주요 문제 사유는 기타 문제로 수의검사가 생략되어 리콜 조치됨**
- **EU로 수출하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은 EU 수입국의 국경 통제소(BCP)에서 수의학적 국경 통제(Veterinary border control)를 반드시 거쳐야 함**

◦ EU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2-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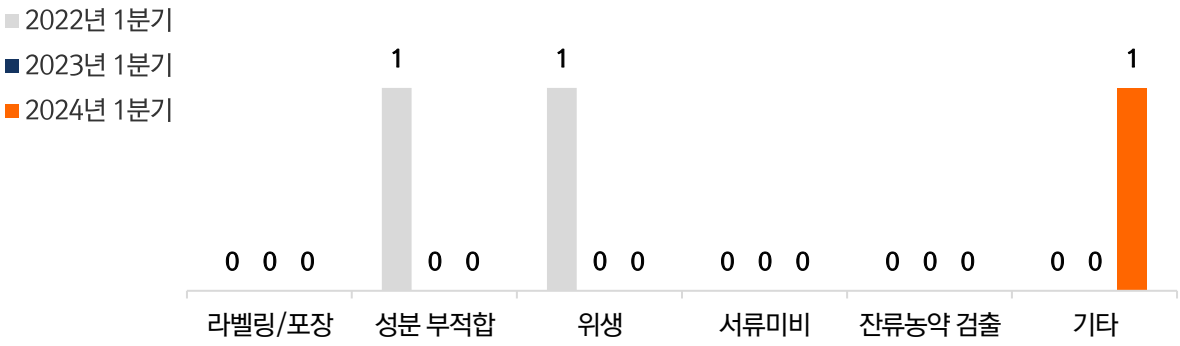

◦ EU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기타 수의검사 생략
- 관련 규정: (EU) 2017/625

관련 수입국 규정	(EU) 2017/625 - 식품 및 사료법, 동물 건강 및 복지에 관한 규칙, 식물 건강 및 식물 보호 제품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식 감독 및 기타 공식 활동에 관하여
시행규칙 ((EU) 2017/625)	- 수의학적 국경 통제는 유럽연합(EU)으로 들어오는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이 유럽연합 법률에 명시된 특정 수입 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핵심 요소임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은 심각한 인간 및 동물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입국 지점에서 국경 통제소(BCP)라고 하는 특정 통제를 받아야 함 -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의 화물은 특정 검사 통과 후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TRACES)에서 일반 건강 입국 문서(CHED)를 발급받은 경우 유럽연합(EU) 반입 가능
UR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7R0625&qid=1715134799175 https://food.ec.europa.eu/animals/veterinary-border-control_en

1) 리콜은 현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리콜사례를 의미함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필리핀

한국산 12건

한국산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60	22	12
농산물	57	21	12
수산물	3	1	0

- **'24년 1분기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1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
- **'24년 1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음료 5건, 기타조제 농산품 3건, 과자류 2건, 채소류와 커피류가 각 1건이며, 모두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됨**
- 필리핀의 식품의약청법에 따르면,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식품)은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및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이 금지되어 있음**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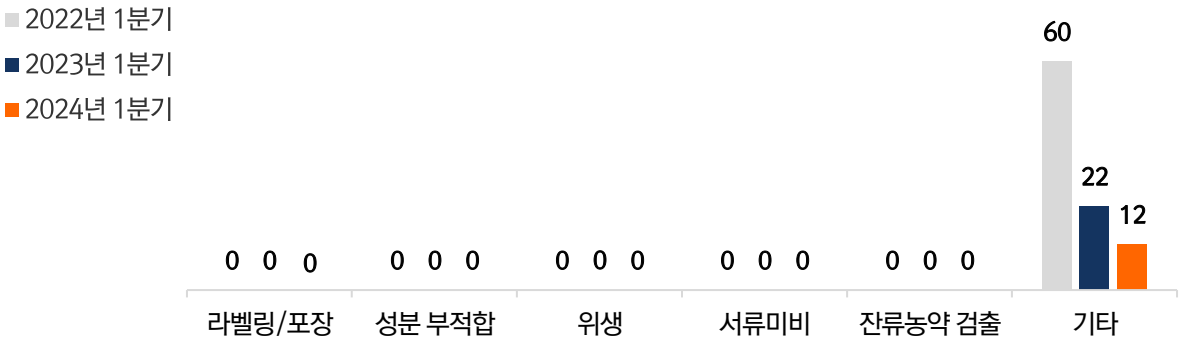

◦ 필리핀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기타/ 등록되지 않은 상품
- 관련 규정: 식품의약청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관련 수입국 규정	식품의약청법
식품의약청법	제 11조. 다음과 같은 행위와 그 원인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금지된다. (j) 이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만, FDA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판매 공급, 유통, 이전, 비소비자의 사용, 홍보, 광고 또는 후원
URL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09/08/18/republic-act-no-9711/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2. 1분기 한국산 리콜사례 분석 정보

호주

한국산 5건

한국산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0	3	5
농산물	0	3	5
수산물	0	0	0

- **'24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산 리콜사례는 총 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24년 1분기 리콜 조치된 한국산 제품은 면류 3건과 기타조제 농산품 2건이며, **주요 문제 유형은 라벨링/포장 문제로 모든 품목에서 알레르기 성분(달걀)이 미표기된 것이 확인됨**
- 호주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에 따라 달걀을 포함하여 10개의 지정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문제 유형 분석(2022-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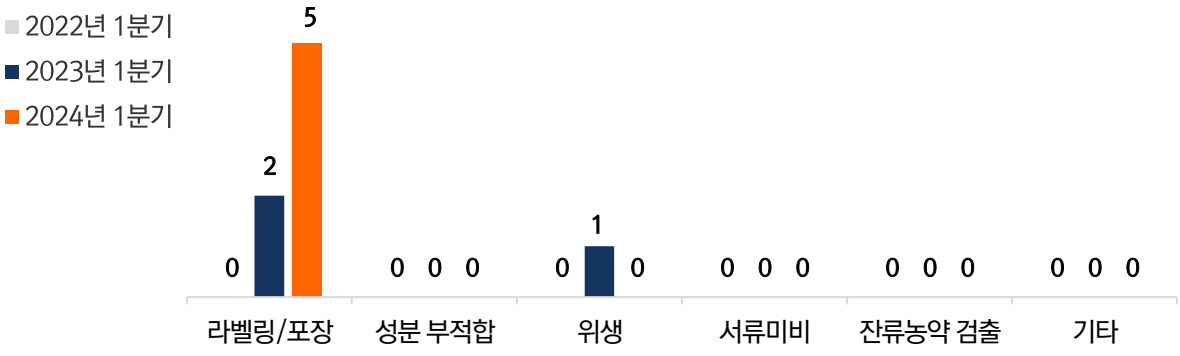

◦ 호주의 한국산 리콜사례 세부 정보

- 주요 거부 사유 : 라벨링/ 필수 알레르겐 표기정보 미표기
- 관련 규정 : FSC Standard 1.2.3

관련 수입국 규정	FSC Standard 1.2.3
식품기준법	표준 1.2.3 요청 정보 – 경고 문구, 충고 문구 및 신고 다음의 식품 또는 물질이 판매용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식품 또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 필요 (b) 다음 식품 중 하나 또는 그 식품 :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독일 밀과 해당 곡물의 변종), 갑각류, 달걀, 생선, 우유, 땅콩, 콩, 참깨, 견과류(코코넛 제외) , 루핀
URL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C00418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호주

전체 리콜사례 총 **17**건 / 한국산 5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23	23	17

2024년 1분기 호주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7건으로 현지산 12건, 수입산 5건이며 한국산은 5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 사유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필수 알레르겐 정보를 미표기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플라스틱, 유리 등의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5건, 과자류와 면류가 각 3건, 곡류, 과실류, 음료, 주류, 코코아류, 포유 가축 육류가 각 1건으로 조사됨

◦ 호주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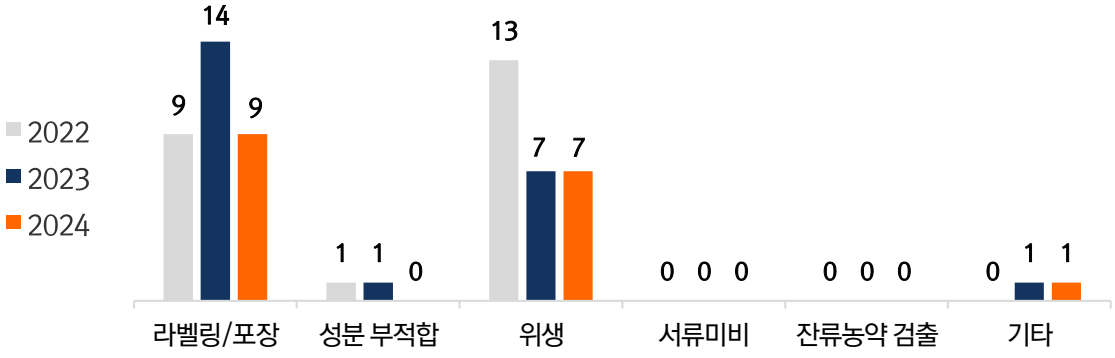

뉴질랜드

전체 리콜사례 총 **24**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38	71	24

2024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4건으로 현지산 22건, 수입산 2건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캄필로박터균 등의 미생물 또는 플라스틱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8건, 낙농품 6건, 과자류 5건, 어류와 포유 가축 육류 각 2건, 소스류 1건 순으로 조사됨

◦ 뉴질랜드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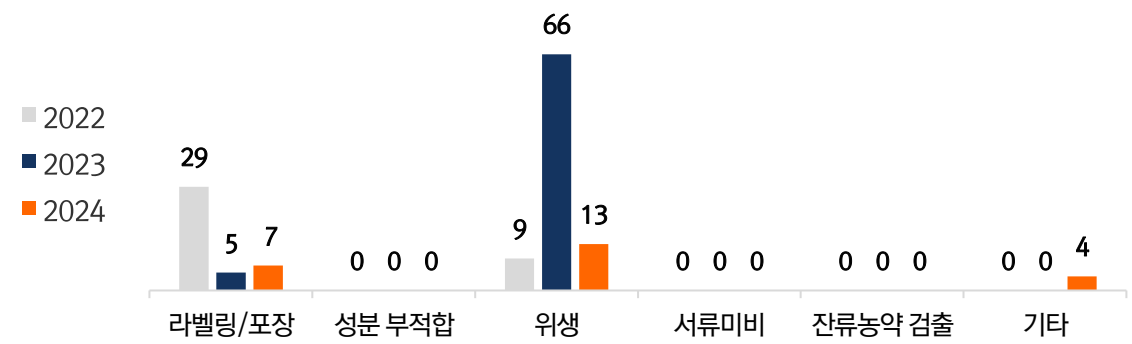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일본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31	81	59

전체 리콜사례 총 **59**건 / 한국산 0건

2024년 1분기 일본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59건으로 현지산 50건, 수입산 9건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알레르기 성분,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기 정보가 누락되거나 보존방법이나 소비 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리콜 조치 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대장균, 곰팡이 등의 미생물 또는 금속, 플라스틱 파편 등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15건, 소스류 6건, 가금육류, 어류, 주류, 채소류가 각 4건 순임

◦ 일본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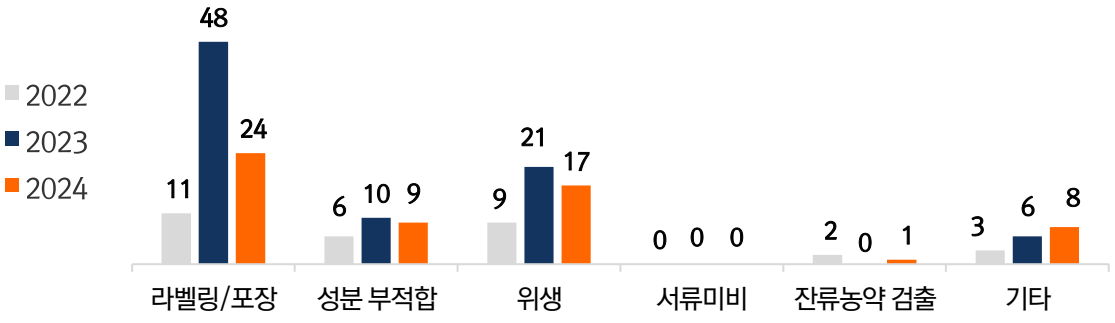

필리핀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377	338	260

전체 리콜사례 총 **260**건 / 한국산 12건

2024년 1분기 필리핀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60건으로 현지산 237건, 수입산 23건이며 한국산은 총 12건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사유는 기타 문제로 기관의 등록 절차를 불이행하여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73건, 과자류 53건, 채소류 17건 순으로 확인됨

◦ 필리핀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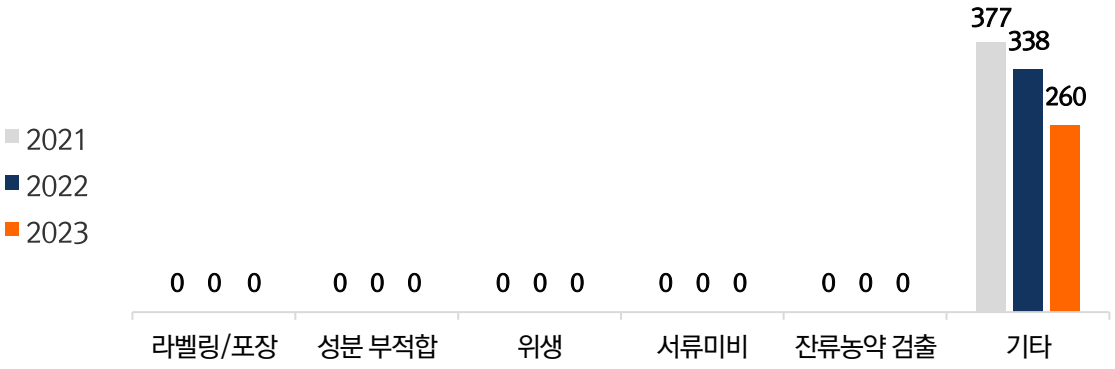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미국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171	285	206

전체 리콜사례 총 **206**건 / 한국산 0건

2024년 1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206건으로 현지산 200건, 수입산 6건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리콜 발생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되었고,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주로 우유, 참깨, 밀, 콩 등 필수 알레르겐을 미표기한 것이 확인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기타조제 농산품 62건, 과자류 59건, 낙농품 29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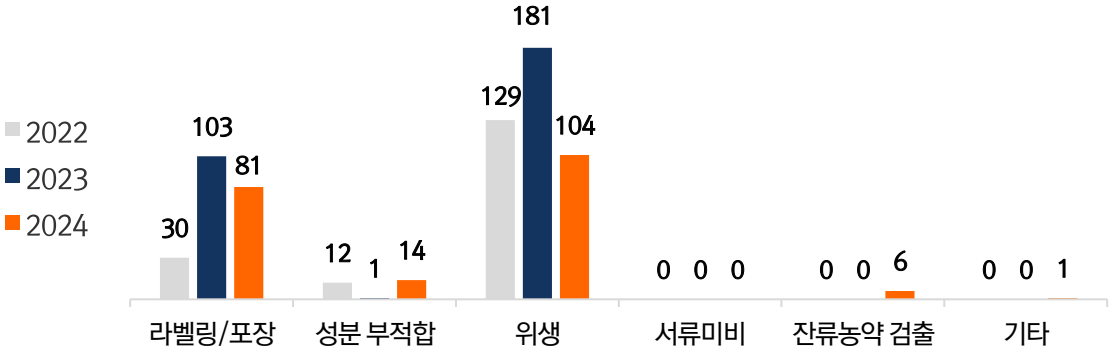

캐나다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171	153	196

전체 리콜사례 총 **196**건(문제사유 총 243건) / 한국산 0건

2024년 1분기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96건으로 현지산 195건, 수입산 1건이며, 그중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47건의 리콜 사례는 2개의 문제사유가 확인되어, 중복 문제사유를 포함한 문제 유형은 총 243건임. **전체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주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플라스틱, 금속 조각이 검출되어 리콜됨.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주로 알레르겐을 미표기하거나 이중언어로 표기하지 않아 리콜 조치됨.** 제품별로는 음료 58건, 과자류 48건, 기타조제 농산품 28건 순으로 확인됨

◦ 캐나다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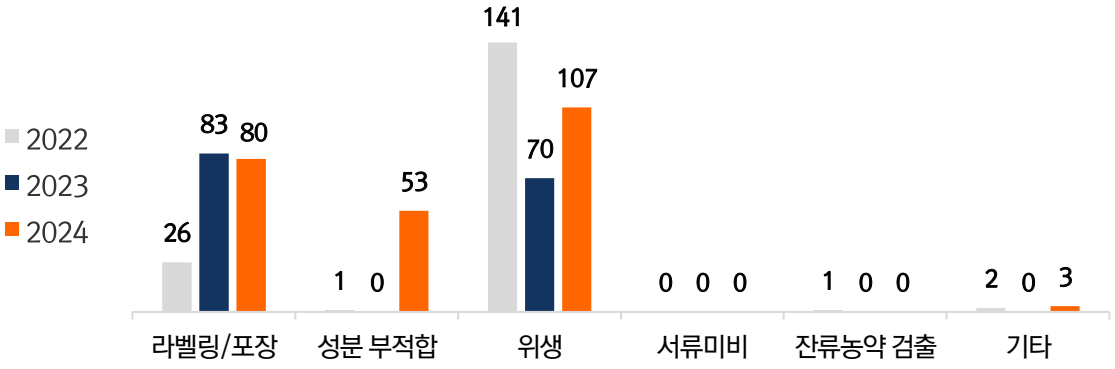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싱가포르

전체 리콜사례 총 **10**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13	12	10

2024년 1분기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10건으로 모두 수입산 제품이며 그 중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우유, 땅콩 등 알레르겐을 미표기하여 리콜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됨.** 제품별로는 갑각류, 과실류, 기타조제 농산품, 낙농품, 가축류가 각 2건씩 발생함

◦ 싱가포르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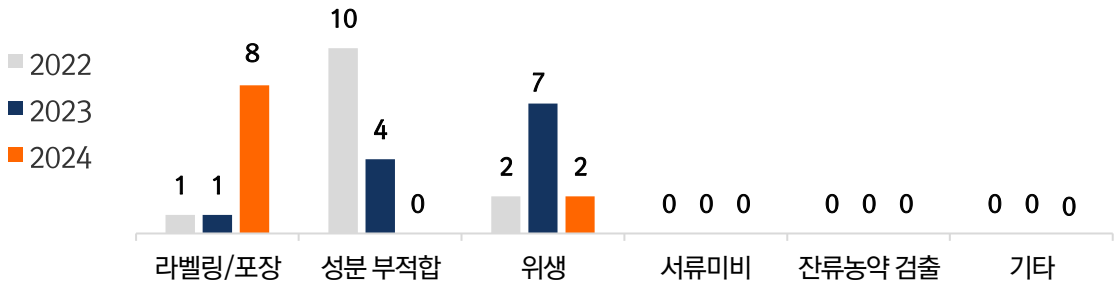

이스라엘

전체 리콜사례 총 **53**건 / 한국산 0건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28	30	53

2024년 1분기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53건으로 수입산 13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지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위생 문제로 살모넬라균, 아플라톡신 등의 미생물 또는 금속 조각 등의 이물질 검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2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알레르겐이 검출되거나 라벨링 오류, 유통기한 표기 오류 등의 문제가 확인됨.** 제품별로는 과자류 25건, 기타조제 농산품 13건, 식물성 유지 5건 순으로 발생함

◦ 이스라엘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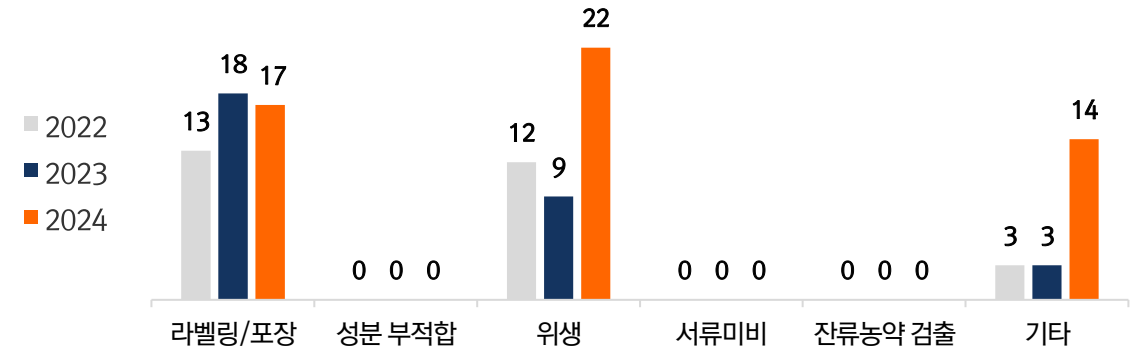

Case Analysis on Food Recall

3. 1분기 글로벌 리콜사례 동향

EU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217	181	472

전체 리콜사례 총 **466**건(문제사유 총 472건) / 한국산 1건

2024년 1분기 EU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66건으로 현지산 91건, 수입산 375건이며** 한국산은 1건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성분 부적합 문제로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아황산염, 히스타민 등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식품 성분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유리, 플라스틱 조각 등의 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 유형은 기타조제 농산품 73건, 과자류 50건, 과실류 45건, 채소류 29건 순으로 조사됨

◦ EU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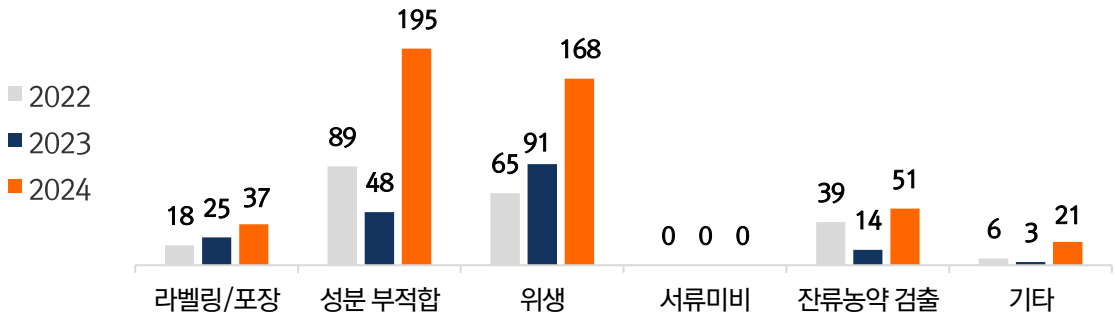

영국

글로벌 리콜사례 1분기 발생 동향			
구분	'22년	'23년	'24년
전체	-	-	47

전체 리콜사례 총 **47**건 / 한국산 0건

2024년 1분기 영국에서 발생한 리콜 건수는 총 47건으로 모두 현지산 제품이며 한국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리콜 발생 사유 1위는 라벨링/포장 문제로 우유, 땅콩 등 알레르겐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리콜되었으며, 2위는 위생 문제로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금속 또는 나방 등 이물질이 확인되어 리콜 조치됨.** 제품 유형은 기타조제 농산품 19건, 과자류 11건, 낙농품 6건 순으로 조사됨

◦ 영국의 글로벌 리콜사례 문제 유형 3개년 분석(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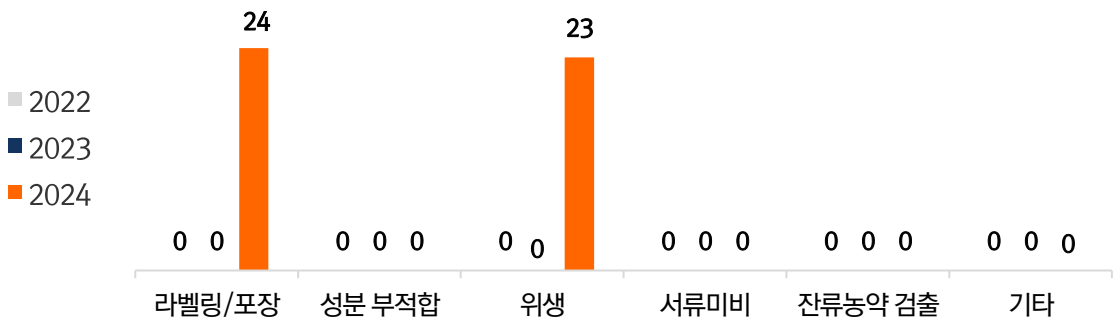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2024년 1분기 글로벌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4.01.01 – 2024.03.31 기준, 총 3,478개 글로벌 식품 이슈 수집
- 키워드 빈도분석 시행, 전체 키워드 중 한국의 주요 수출 식품의 빈도수 확인 및 관련 주요 이슈 추출
- 주요 이슈는 최빈출 식품 키워드 10개 중 한국 수출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글로벌 이슈 선정

키워드	빈출건수	관련 주요 이슈
가금육류	2,546	일본, 분말청량음료 제품 및 냉동식품의 식품 위반 주의
음료	**1,939**	**러시아, 2024년 3월 1일부터 과일음료를 제외한 알루미늄 포장의 무알코올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적용**
기타조제 농산품	1,615	인도네시아, 포장 가당 음료 소비세 부과 계획 발표
과자류	1,568	인도네시아, 건강기능식품 사전수입승인(PI) 제도(쿼터) 의무 대상 확대
어류	1,064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곡류	952	러시아, 2024년 3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방부제, 어린이용 생수 판매 시 라벨링 코드 스캔 의무화 시행
채소류	780	태국, 수입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
과실류	665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수입 검사 대상 CODE 목록 개정안 발표(버섯, 어류)
당류	657	
포유 가축 육류	620	

◦ 2024년 1분기 글로벌 주요 모니터링 이슈

러시아, 2024년 3월 1일부터 과일음료를 제외한 알루미늄 포장의 무알코올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적용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상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임

러시아는 제품 포장 유형에 따라 체스니 즈낙 라벨링의 의무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유리, 폴리머 포장 청량음료 : 2023년 12월 1일~
- 알루미늄을 포함한 캔 음료 : 2024년 3월 1일~
- 모든 유형의 포장에 담긴 비알콜성 음료 : 2024년 6월 1일~

- 2024년 3월 1일부터 과일음료를 제외한 알루미늄 포장의 무알코올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적용이 의무화됨
- 러시아에서 해당 음료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러시아 공공 정보 시스템인 체스니 즈낙에 제품을 등록하고, 디지털 라벨(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을 발급받아야 함
- 시행 기간 이후 해당 라벨링이 없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에 과태료 1,500~300,000루블이 부과되며, 수입된 식품의 경우 수입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됨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러시아의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적용 ”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현지 전문가 정보]

- 이름 : Manager. Maksim
- 소속 : PCT Company

Q1. 체스니 즈낙 제도가 식품군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 동향이 어떠한가요? 해외 수출 기업들의 준수 또는 미준수 발생 동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1. **2024년에는 식이 보조제, 방부제 등 더 많은 제품 범주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이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연어와 철갑상어 캐비어에 대한 시범 적용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Rospotrebnadzor)이 불시 검사 시행 빈도를 높이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체스니 즈낙 라벨링 취득에 대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Q2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상 음료의 예시나 HS CODE를 알 수 있을까요?

A2.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HS CODE 기준, 2202991800과 2206008901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HS CODE 2202991800의 경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물질을 첨가한 광천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 물, 기타 무알콜 음료’**에 해당하며, **HS CODE 2206008901의 경우 기타 발효음료(예: 사이다, 배 사이다, 꿀 음료, 사케), 발효 음료의 혼합물 및 따로 명시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발효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의 혼합물 중 실제 알코올 농도가 7vo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Q3. 체스니 즈낙 라벨을 부착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언제까지 부착이 완료되어야 하나요?

A3. **라벨 부착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담당**하지만, 소매업체도 자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라벨은 상품 배송(양도 또는 인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부착**해야 하며, 늦어도 제3자에게 상품을 양도한 날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Q4. 수출업체가 체스니 즈낙 라벨링 발급을 위해 별도로 해야하는 등록이나 거쳐야하는 발급 절차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4. 우선 체스니 즈낙 라벨링은 러시아 유망기술발전센터(CRP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스니 즈낙 라벨링을 발급하려면 먼저, **러시아 세무 당국에서 적격 전자 서명(ECS, Enhanced Qualified Signature)을 발급 받고 해당 서명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markirovka.crpt.ru)에 업체와 상품을 등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API 계정을 통해 체스니 즈낙 라벨링 코드를 주문 및 결제합니다.** 시스템,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추가 작업과 관련해서는 chestnyznak.ru 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2024년 1분기 한국 관련 모니터링 이슈 키워드 분석 결과

- 2024.01.01 – 2024.03.31 기준, 식품 비관세장벽 이슈 중 "Korea"를 포함한 이슈 총 436건 수집
- "Korea" 를 포함한 이슈의 키워드 빈도분석 수행, 최빈출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계 이슈의 빈출 건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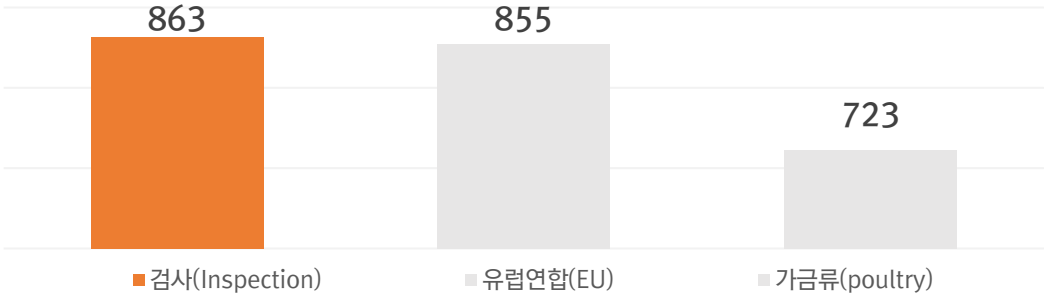

주제어	연관 키워드	연계 빈출 건수
Korea(한국)	검사 (Inspection)	863 건
	유럽연합 (EU)	855 건
	가금류 (Poultry)	723 건

※연계 빈출 건수는 주제어와 연관어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이슈의 수입니다.

◦ 2024년 1분기 한국 관련 주요 모니터링 이슈

EU,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 검역 협상 체결…수출 가능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와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검역 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이로써 **EU의 수출 조건 및 절차에 부합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게 됨**

※ 對 EU 수출 조건

1) 수입 승인국 조건과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한국은 D처리 가금육에 대한 EU 수입 승인국임(*D처리 가금육이란 중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 가공을 말함)

⇒ 한국은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제출국임

2) 수출 시, 화물에 수출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육류 및 육가공품(가금육 포함) 함유 식품 화물에는, 상온/비상온 보관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첨부 필요

3) 2024년 4월 2일 기준, 한국의 EU 승인 가금육 생산 및 가공시설은 총 6개(도축장 3개, 가공장 3개)임

(*) EU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상황은 대상 시설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및 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에 문의(https://www.qia.go.kr/intro/org/qia_org.jsp)

Ⅲ. 1분기 주요 통관검역제도 이슈

◦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 가능”에 대한 현지 전문가 Q&A

[현지 전문가 정보]

- 이름 : Ms. Solveig
- 소속 : 덴마크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Food Administration)

Q1. 그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수출 가능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무엇인가요?

A1. 한국산 가금류 제품 수입이 해제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춘 상황에서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개선과 러시아의 전쟁 및 북한인권 침해 규탄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해외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한국이 한국산 열처리 가금류 수입을 승인하기까지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도입, 조류인플루엔자 검역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2. 이번 검역 협상 타결에 따라, EU로 수출이 가능한 열처리 조건이 무엇인가요?

A2. EU로 열처리 가금육 수출 시 EU의 수입 승인국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은 ‘D’처리 국가로 ‘중심온도 70도 이상의 열처리 가공’**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Q3.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나 시설 등록 등 한국 수출 업체가 필수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3. 유럽연합으로 가금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관련 수의학 및 일반 위생 조건에 대한 인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한 EU 규정(EU 2020/2235)의 상법을 준수하는 **수출증명서(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수출 국가의 공식 수의사가 서명하여 제품이 EU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동물성 제품이 EU에 도착하면 **수의국경관리국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인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단, 제품 가치가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모든 수출업자가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수출국은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EU 공동체 기준 실험실(EU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EU로 수출이 확대되거나 EU 시장에서 인기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은 무엇인가요?

A4. 이탈리아에서는 특히 열처리 가금류가 포함된 제품이 현지 한식당과 현지 아시아계 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가금류가 포함된 가장 인기 있는 수입 제품으로는 만두와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